

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9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1. 10.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을 통해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구조정 총괄

- 1) 구분청 : 3국 1실 18과 81팀 → 3국 1실 18과 84팀(증 3팀)
- 2) 사업소 : 1문화회관 4팀 → 1문화회관 3팀(감 1팀)

나. 국민체육센터팀 이관(안 제5조, 제13조)

- 1) 국민체육센터팀 : 문화회관 → 문화홍보과

다. 건강생활지원센터 폐소(안 제8조)

- 1) 건강생활지원센터 폐소 승인(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-7223호)에 따른 정비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지방자치법 제125조
- 2)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'22. 10. 24. ~ 10. 26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
- 5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의결

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체육지원”을 “체육지원, 국민체육센터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”를 “제1항에 따른 보건소”로 한다.

제13조제6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보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8조 관련)

명 칭	위 치	관할구역
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	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(평리동)	서구 관내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자치행정국) ① (생 략)</p> <p>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홍보, 문화관광, <u>체육지원</u>, 전산운영, 정보통신 등에 관한 사무</p> <p>3. ~ 6. (생 략)</p>	<p>제5조(자치행정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체육지원</u>, <u>국민체육센터</u>----- 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설치) ① (생 략)</p> <p>② 「<u>지역보건법</u>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<u>건강생활지원센터</u>를 설치한다.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.</u></p>	<p>제8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보건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소관사무)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<u>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13조(소관사무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~ 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

-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(생략)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